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0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06일

3. 제안사유

-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
- 보건·환경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 있어서 주민편의를 위해 납부 방법의 다양화라는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(안 제3조)
 - (현행) 질병관리본부
 - (변경) 질병관리청
- 수수료 납부방법 변경(안 제3조)
 - (현행) 수입증지
 - (변경) 수입증지, 신용카드, 현금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
-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 삭제(안 제3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가. 제출배경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보건·환경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 있어서 주민편의를 위해 납부 방법의 다양화라는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**안 제3조제1항**은,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라 “질병관리본부”가 “질병관리청”으로 승격되었고, 이에 따라 「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」이 「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」으로 개정(시행 2020. 9. 12.)된 바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.
- **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**은 검사, 시험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행 수입증지 납부로 제한하던 것을 수입증지, 신용카드, 현금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다양화한 것임.
 - 이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⁸⁾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14조⁹⁾를 준용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 - 또한, 종이수입증지는 1950년대 전산민원접수대장 등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지방세, 사용료, 각종 수수료 등을 현금 대응으로 납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표로 그동안 위·변조가 용이하며 재사용 문제 등 공무원의 부패 발생뿐만 아니라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수수료 등으로 행정비효율성을 야기하고, 구매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해 왔음.
 - 이에 행정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본 개정안은 타당함.

8)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·수입인지·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9) 「전자정부법」 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, 수수료, 과태료, 과징금, 범칙금, 벌금, 과료 등을 현금, 수입인지, 수입증지,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- 안 제3조제5항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 관련 조항을 삭제함.
- 수입증지 요금계기는 종이 수입증지 대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, 「충청북도 수입증지 조례」 제4조의2¹⁰⁾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와 동일하게 수수료 납부에 사용이 가능한 바, 별도의 조항은 삭제해도 문제가 없음.

다. 종합 검토 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보건·환경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 있어서 주민편의를 위해 납부 방법의 다양화라는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.

10) 「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」 제4조의2

제4조의2(증지요금 계기의 사용) ①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(이하 “계기“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